

방송통신사무소 공고 제2024-11호

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(등기)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(송달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24년 2월 1일

방송통신사무소장

- 공고사유: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- 공고기간: 2024. 2. 1.~2024. 2. 14.
- 공시송달 대상

구분	대상자	생년월일/ 법인등록번호	과태료 고지번호	과태료	대상자 주소
1	김민아	1994.O.10	0178200274100006359	₩12,045,000	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송림로 185번길 OO
2	권형진	1979.O.16	0178200274100005647	₩6,562,500	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와룡로 OO
3	최명선	1986.O.21	0178210274100002193	₩4,357,500	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228길 OO
4	한상진	1978.O.28	0178200274100007098 0178200274100006557 0178200274100006219	₩8,602,200 ₩19,116,000 ₩36,936,000	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햇골길 49번길 OO
5	김윤명	1982.O.12	0178200274100001338	₩19,116,000	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 27길 OO
6	전동숙	1954.O.19	0178240274100000106	₩700,000	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33길 OO
7	송재민	1986.O.27	0178240274100000110	₩3,750,000	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412번길 OO
8	조대일	1975.O.08	0178240274100000112	₩3,750,000	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당로11길 OO
9	정회철	1960.O.21	0178240274100000118	₩3,750,000	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33길 OO
10	노종구	1973.O.21	0178240274100000120	₩3,750,000	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외로50번길 OO
11	성연희	1978.O.04	0178240274100000124	₩2,000,000	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5길 OO
12	(주)도움이티에스	110111-3063263	0178240274100000116	₩15,000,000	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95 (가산동) 906~911호

4. 문의: 방송통신사무소 운영지원팀 (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, 11층 ☎ 02-6735-8139, 8141, 8142)
5. 공고내용: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6. 납부방법: 인터넷지로(giro.or.kr) 또는 NTR POPCON(ntrpopcon.go.kr), 모바일앱(NTR POPCON)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(수납기관 :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)
7. 가산금 및 증가산금 등 안내
 - 가.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%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,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.2% 증가산금(重加算金)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.
 - 나. 증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, 가산금 3%와 증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%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.
 - 다.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,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「국세징수법」 제24조에 따라 채권, 동산, 부동산, 유가증권,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.
 - 라. 또한,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,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